

제6부

특허권의 침해와 대응 방법

1. 특허권의 침해

특허권 침해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타인의 권리(특허권 또는 전용 실시권)로 되어 있는 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특허권 침해 성립요건

특허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실시가 업으로 되어 있고, 실시자가 그 실시에 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니다.

3.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권리자의 대응방법

특허의 침해여부 판단은 구체적으로 민, 형사 소송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권리자는 그 권리가 침해하고 있는 자에게 경고장을 통해 침해사실을 알려야합니다.

경고장에는 타인의 실시행위가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과 권리침해에 따른 구제조치의 청구가 가능함을 주장하고 공개 또는 등록공보, 등록원부 등을 첨부하여 우체국의 내용증명 등으로 송부합니다.

4. 특허권 침해 경고를 받은자의 대응 방법

특허등록원부를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경고인지, 특허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권리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침해의 대상이 되는 특허권과 그 권리의 기술적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침해주장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면 실시발명이 특허발명과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발명이 출원전 공지된 것인지 여부와 출원시의 기술수준 등을 조사하여 특허무효심판 청구도 할 수 있으며, 권리자와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 바로알기

권리자

경고장에 포함해야 할 사항

1. 실시제품이 특허출원 / 특허발명과 동일함
2. 출원공개, 출원공고, 특허등록 이후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장을 받은 시점부터 보상금 지급해야 함
3. 계속 침해시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해야 함
※ 공개 / 등록 공보, 등록원부 첨부

경고장 발송 전 주의사항

1. 경고장 발송 전, 타인의 실시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수집
2. 특허침해가 아님에도 침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

실시자

경고장의 내용 중 확인해야 할 사항

1. 등록원부를 통해 특허권의 유효여부 확인
2. 특허청구범위에 실시제품이 포함되는지 판단
3. 특허발명의 출원전에 동일한 발명이 공지되었는지 확인

경고장 검토 후 조치 사항

1. 특허발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확인 가능
2.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